

보도일시	2020. 5. 20.(수) <b>배포시점</b>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시	2020. 5. 20.(수)	담당부서	과학기술전략과
담당과장	윤경숙(044-202-6730)	담당자	이호준 사무관(044-202-6734)

##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.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안, 국회 본회의 통과 -
-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 확립 -
-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-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최기영, 이하 '과기정통부')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'국가연구개발혁신법안'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- 동 법은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, 혁신 환경 조성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핵심 원칙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,
  -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하여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과기정통부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면밀히 마련하고,
  -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## [ 법 제정의 의미 ]

□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**넓고 복잡한 연구개발 관리규정이 행정 부담의 원인으로** 제기되어 왔다.

※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의 62.7%를 행정업무에 할애(KISTEP, '16)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각종 규정이 286개 ('19.10월 기준)에 달해 연구자는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.

□ 그간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('01년 제정, 대통령령)」이 공통규범 성격으로 운영되어 왔으나,

○ 다른 법률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지 못하여 **관리규정 체계화에 한계가** 있었으며, 제도 개선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**매번 부처별 관리규정을 일일이 개정**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.

□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은 국가연구개발 추진에 관하여 **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로 복잡한 관리규정을 간소하게 정비**하는 효과가 있으며,

○ 그 내용에서도 **상향식 과제기획 원칙,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,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**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.

□ 따라서 동 법은 **연구자가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**하고,

○ 나아가 **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**하여 혁신적인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## [ 주요 내용 ]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은 총 5장 41개 조로 구성되며(부칙 제외), 제2장부터 제4장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.
- 제2장(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)에서는 상향식 과제기획을 원칙으로 하고, 연구비 사용계획을 간소화하며, 연구개발과제 협약·평가·정산의 주기를 연차에서 단계로 전환하는 등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
- 제3장(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)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정보시스템의 운영 근거,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,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대한 주기적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등 연구개발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.
- 제4장(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)에서는 성실 실패를 제도화하고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독립된 기관이 재검토하되,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제재처분의 강도는 강화하는 등 연구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

## [ 향후 계획 ]

- 과기정통부는 시행일('21.1.1일)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고, 현장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자용 세부 지침을 제작·배포할 계획이다.
- 또한 이 과정에서 연구 현장과 관계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, 법 시행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추진한다.

- 최기영 장관은 “연구 현장에서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바라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쁘게 생각하며,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꼼꼼히 마련하겠다”면서,
  - “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이 마음껏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 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호준 사무관(☎ 044-202-673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